[별지 제63호의29서식] <신설 2020. 6. 15.>

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

❶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:)	
❷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
❸ 공제세액 계산내용

	공제대상금액(ⓐ)		공제율(ⓑ)	⑦ 공제세액(ⓐ × ⓑ)
공제금액	⑥ 선결제금액		1/100	원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매출전표, 직불·선불카드영수증, 직불·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, (세금)계산서 등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, 금액 등 선결제 내역을 기록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(갑)·(을) 3.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소상공인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	수수료 없음

작 성 방 법

⑥ 선결제금액란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의 업무에 필요한 재화·용역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, 그 구매대금을 재화·용역을 공급받는 때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중 실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은 금액을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